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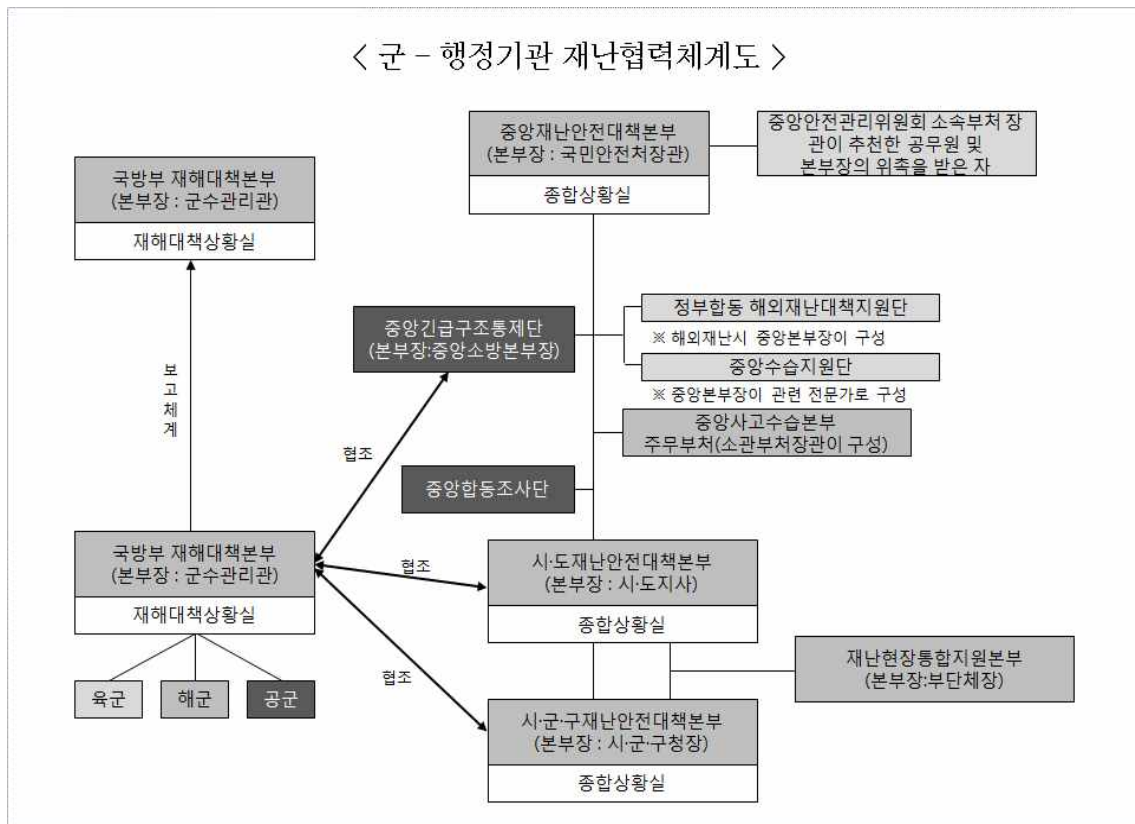
軍, 국가재난지원 활성화 방안

정찬권(한국위기관리연구소)

1. 머리글

- ▷ 군 자체 보유장비/물자 조직적으로 동원 및 투사(projection) 능력 보유
“군 지원 사례” 2014년 세월호 참사,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사태,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, 2011년 동일본 지진해일, 2013년 필리핀 태풍 등
- ▷ 군 본연의 임무와 더불어 재난 구조지원과 같은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(MOOTW: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) 수행체제 구축 필요

2. 현실태 분석



▷ 법·제도적 측면

- 국가재난시 군 지원 뒷받침할 법적근거 미약
- 군의 병력·장비지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소재가 불분명
- 국방부 및 각군 재난대책업무처리관련 훈령·규정 등이 현실과 괴리
- 초국가적 재난발생시 공조대응위한 주변국과 협력체제구축 미흡

▷ 조직체계 측면

- 국가재난 지원하는 집행부대 재난관리조직기능 취약
- 화생방, 유도선 사고 등 특수재난전담지원부대 부재
- 재난관리 전담하는 전문 대응군 부재
“예” 프랑스는 1968년 150여 명의 시민안전상비군, 미국도 9·11테러 이후 북부사령부(NORTHCOM)에 재난사후관리 작전담당부대로 운영

▷ 재난교육훈련 측면

- 지휘관·참모 재난관리 이해증진, 전문성 제고위한 재난교육훈련 미약
- 재난현장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재난구조부대 훈련시간 부족
-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재난관리교육 콘텐츠 부실

▷ 민·관·군 재난협력(Governance) 측면

- 지자체-군 재난대응협업시스템의 연계성·통합성 기능발휘 미흡
- 군부대와 지자체 부족한 예산으로 재난지원기반체계구축 애로
- 재난구조부대 보유장비물자의 노후화·성능낙후, 소요기준 부대별 상이

▷ 군 사회 인식 측면

- 군 수뇌부를 비롯한 간부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부족
- 각급제대 재난담당 보직기피 현상 상존
- 군내 재난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

3. 국가재난시 군 지원 활성화 방안

▷ 법 · 제도적 측면

- 군의 재난지원 활성화 위한 가칭 “국가재난지원에 관한 법률” 제정

- 재난발생시 동원예비군 자원 적극 활용토록 관련법 개정
 - 전문인력 양성위해 각군 대학, 합참대, 국방대 등에 재난관리전문과정 설치
 - 국가재난시 군정권과 군령권 부대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 시행
 - 주변국과 재난훈련, 세미나 등 정례화 통한 단계적 협력체제 구축
- ▷ 조직체계 측면
- 전술제대(연대, 사단, 군단 등)에 재난 전담조직과 인력 단계적으로 확충
 - 국가재난시 軍지원 첨병으로 가칭 “재난전문대응군” 창설 적극 검토
- ▷ 재난교육훈련 측면
- 국방대 등 학교기관의 재난관리 교육과정(Curriculum) 재설계·개선
 - 군(軍) 중증외상센터 권역별 중앙에 설치 운영
 - 군 재난대비훈련, 민·관 합동 패러다임으로 전환
- ▷ 민·관·군 재난협력 및 지원체제강화(Governance)
- 민·관·군 재난관리협력 제도화로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
 - 행정기관-군부대의 통합재난대응 기능발휘 여건 조성
 - 국방재난관리업무 One-Stop 처리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
 - 재난구조부대 보유 노후장비·물자 현대화, 보유기준 통일 재정립
- ▷ 재난에 대한 군 사회문화 패러다임(Paradigm) 변환
- 포괄적 안보개념에 부합된 군 재난관리 체계화
 - 군, 국가재난지원 인적·물적 인프라 재구축
 - 현행 대민지원은 ‘작전지원’개념으로 전환 및 실시

4. 결론

국가재난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자원으로서 포괄적 안보환경에 부합된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 재정립과 이미지 제고 대책 강구 필요